
경남 외국인 체류 및 비자 안내 매뉴얼



목 차 (Contents)

(Quick Guide) 경남 외국인 체류 및 비자 핵심 안내 1

Part 1. 경남 생활의 시작

- 1. 경남 지역 소개 및 지원 정책 4
- 2. 필수 연락망 (1345 & SOS) 6

Part 2. 비자 및 체류자격

- 1. 비자(사증)의 종류와 이해 10
- 2.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일반 12
- 3. 온라인 / 방문 예약 및 신청 절차 13
- 4. 체류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16
- 5. 외국인 지원 서비스 18

Part 3. 경남 광역형 비자

- 1. 사업 개요 및 운영 기간 20
- 2. 적용 대상 및 직종 20
- 3. 신청 및 혜택 21

Part 4. 정주 비자 경로와 지역 정착

- 1. 지역특화형 비자 (E-7-4R, F-2-R, F-4-R) 24
- 2. 지역특화 비자 신청 요건 24
- *붙임자료
- 3. 지역 인재가 되는 경로 51

목 차

Part 5. 유형별 맞춤형 체류 안내

1. 유학생 (D-2, D-4)	53
2. 전문인력 (E-7)	58
3. 비전문취업 (E-9)	60
4. 결혼이민 (F-6)	62
5. 재외동포 (F-4)	64

Part 6. 출입국민원 & 기타

1. 민원신청 방법	65
2. 기타 온라인 서비스	67

Part 7. 경남에서의 안정된 일상생활

1. 비자(사증) 및 체류자격 상담	69
2. 근로 권리 및 노동 상담	70
3.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 이용	71
4. 주거 및 교통 안내	71
5. 법률 및 인권 지원	72
6. 한국어 및 사회 적응 교육	72

(붙임1)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숙련기능인력(E-7-4R) 모집 공고

(붙임2)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재외동포 모집 공고

(Quick Guide) 경남 외국인 체류 및 비자 핵심 안내

1. 체류자격 별 주요 기관 연락처 (Contacts by Visa Type)

구분	기관명	연락처/웹사이트		주요 내용		
경상남도 민원 및 생활 상담	경남 120 민원콜센터	055-120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외국인 주민· 유학생의 민원 및 생활 상담		
모든 비자 및 체류 민원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1345		모든 체류자격 관련 문의, 변경/연장 등 민원 상담 (D-2, E-7, F-6 등 모든 비자 유형)		
경남 비자 및 체류 상담	경남비자지원센터	055-210-3031~4		- 경남 광역형 비자 관련 문의 *E-7-1(관리·전문기술직) *E-7-3(조선업 숙련공) - 지역특화형 비자 상담 - 일반 비자 및 체류 상담		
지역특화형 비자 (F-2-R) (F-4-R) (E-7-4R)	경상남도 경남비자지원센터	055-211-3384 055-210-3031~4		E-7-4R, F-2-R, F-4-R 등 지역특화형 비자 선발 및 추천 관련 문의		
	각 시·군 *지역번호 055	통영시	650-5235			
		사천시	831-3476			
		밀양시	359-5840			
		의령군	570-2925			
		함안군	580-2655			
		창녕군	530-1685			
		고성군	670-2493			
		남해군	860-3234			
		하동군	880-2193			
		산청군	970-6812			
		함양군	960-4723			
		거창군	940-8883			
		합천군	930-3392			
E-9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창원	1800-5048	- 지역 근로자 대상 지원 및 상담 - E-7-4R 등 체류자격 변경 상담		
E-7 (특정활동)		거제	055-635-1254~5			
		김해	055-724-2725			
		양산	055-912-0255			
		사천	055-853-8884			
F-6 (결혼이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건강가정 지원센터) 통합 *지역번호 055	거제시	682-4958	진주시	749-5443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건강가정 지원사업 - 아이돌봄 광역 지원사업
		거창군	945-1365	창녕군	532-1606	
		고성군	673-1466	창원시	225-3951	
		김해시	329-6355	청원시 미산	245-8745	
		남해군	864-6965	청원시 진해	225-6401	
		밀양시	351-4404	통영시	640-7900	
		사천시	832-0345	하동군	880-6522	
		산청군	972-1018	함안군	583-5430	
		양산시	382-0988	함양군	963-2057	
		의령군	573-8400	합천군	930-4732	
온라인 비자 민원	하이코리아 (HiKorea)	http://www.hikorea.go.kr		비자 신청, 온라인 방문 예약, 체류지 변경 신고 등 민원 포털		
온라인 공식 통합 서비스	대한민국 비자포털	https://www.visa.go.kr/		사증업무 안내 및 신청·발급 서비스		

2. 핵심 요약 (Key Summary by Manual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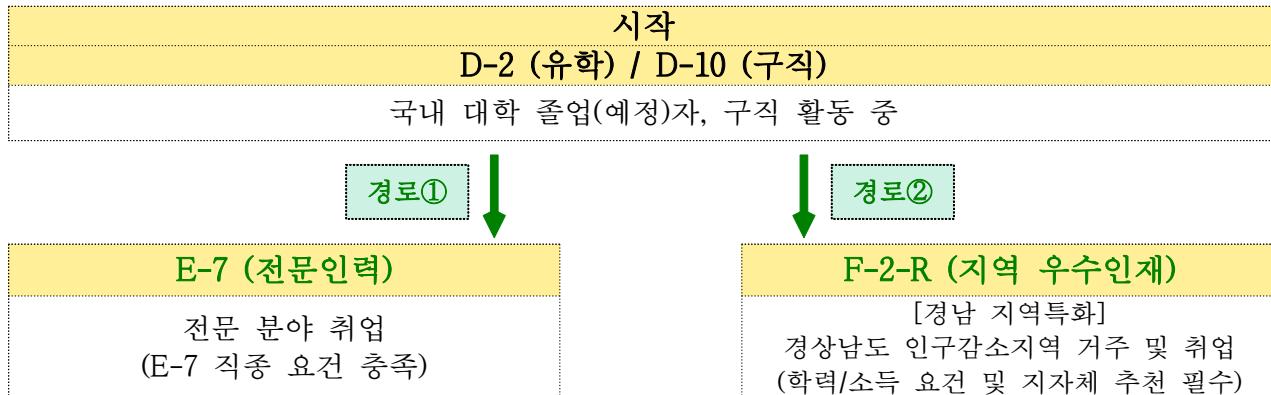
매뉴얼 Part	핵심 내용 및 주요 유의사항	관련 페이지
Part 2. 비자 및 체류자격	<p>체류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Mandatory Du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상시 휴대 및 제시 의무 △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전입(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고해야 함 △ 체류 목적 외 활동 금지 (별도 허가 필수) △ 민원 신청: 대부분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방문 예약 후 처리 원칙 	p10 ~ p15
Part 3. 경남 광역형 비자	<p>(E-7-1, E-7-3)</p> <p>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제도 시범사업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택: 기존 비자보다 완화된 소득 및 학력 요건 적용, 동반 가족 초청 용이 △ 신청: 경남비자지원센터/지자체를 통한 인재 선발 및 추천 필수 	p16 p17
Part 4. 정주 비자 경로와 지역 정착	<p>(F-2-R, F-4-R, E-7-4R)</p> <p>지역특화 비자를 통한 정주 및 영주 비자 취득 경로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비자 발급자는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및 근속 의무 이행 필수 △ 목표: 숙련 인력의 장기적인 지역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p18 ~ p26
Part 5. 유형별 맞춤형 체류 안내	<p>(D-2, E-7, F-6 등)</p> <p>비자 유형별 특별 유의사항 및 체류 활동 가능 범위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①) 유학생(D-2/D-4)은 시간제 취업 허가 없이 아르바이트 불가 예②) 전문인력(E-7)은 사업장 변경 시 신고 또는 허가 필요 	p27 ~ p38

3. 유형별 맞춤형 체류 안내 (Visa Specific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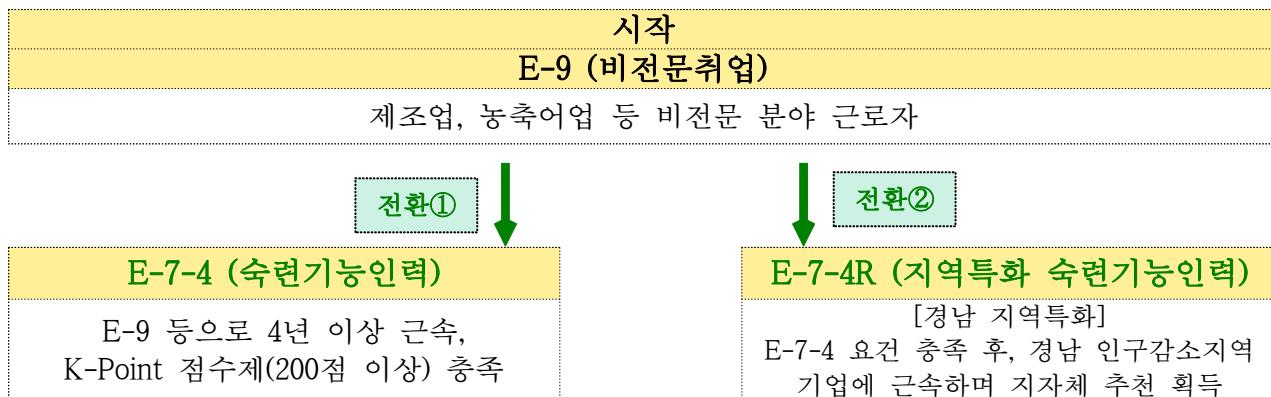
비자 유형	대상 및 체류 목적	핵심 유의사항 및 활동 제한
유학생 (D-2, D-4)	대학(원) 유학(D-2), 어학연수(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 목적 외 활동(아르바이트 등)은 별도 - 시간제 취업 허가 필수 - 학업 성적 유지 의무
전문인력 (E-7)	교수, 연구원 등 전문 분야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주 변경 또는 근무처 이탈 시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 필요
비전문취업 (E-9)	제조업, 농축산업 등 단순 노무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 체결된 사업장에서만 근무 가능 - 근무처 변경 제한(예외 사유 존재)
결혼이민자 (F-6)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입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체류 지원 - 체류 자격 유지 요건 확인 필요
재외동포 (F-4)	외국 국적 동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취업 활동 및 경제 활동 가능 범위가 넓음 - 영리 활동 시 신고/허가 사항 확인 필요

4. 경남 정주를 위한 비자 경로 흐름도 (Visa Pathway Flowchart)

① 유학생(D-2) · 구직자(D-10) → 전문인력(E-7, F-2-R) 경로



② 비전문취업(E-9) → 숙련기능인력(E-7-4(R)) 경로



③ 최종 정주 자격 연계 경로

	체류자격	주요 대상 및 요건
중간	E-7 (특정활동) E-7-4 (숙련기능인력)	일정 기간 근속 및 기타 요건 충족
핵심	F-2-R (지역 우수인재)	[경남 정주 핵심] 지역특화 비자 유지 (E-7-4R을 통한 전환 시 우대 혜택 적용)
정주	F-2 (거주)	E-7 등 전문인력 5년 이상 체류, 연간 소득 요건 충족, 한국어 및 사회통합 요건 충족 등
최종	F-5 (영주)	F-2, F-2-R 등 거주 자격으로 일정 기간(3년 또는 5년) 체류 후, 소득 및 법령 준수 요건 충족

※ 지자체 추천제도

지역특화 비자	추천 필수 기관	우대 혜택
F-2-R (지역 우수인재)	경상남도 지자체 추천 (시·군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 법무부)	E-7-4R 자격자는 추천 심의 시 가점 및 요건 우대 적용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경상남도 지자체 추천 (E-7-4R 지정 기업 근속 확인)	F-2-R 비자로의 전환 시 우선적 혜택 부여

Part 1. 경남 생활의 시작

1. 경남 지역 소개 및 외국인 지원 정책

경남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남의 활발한 산업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특징과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1) 경상남도는 어떤 곳인가요?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제조업과 해양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 **산업 중심지:** 창원, 김해, 양산 등을 중심으로 기계, 항공, 자동차 부품 산업 등 제조업이 발달해 있으며, 거제, 통영 등 해안 지역은 조선업 및 해양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 **주요 도시:** 창원시(도청 소재지), 인구 밀집도가 높은 김해시, 양산시, 그리고 조선업이 발달한 거제시 등이 주요 생활권입니다.
- **생활 환경:**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며, 최근에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생활 지원 시설 및 다문화 지원 기관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2) 경상남도의 외국인 체류 지원 정책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의 주력 제조업 및 조선 산업의 핵심 기지로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단순 근로자가 아닌 지역 사회의 구성원(정주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① 지역 주도형 정주 지원

경상남도는 중앙 정부(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비자 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이 직접 인력 수요를 발굴하고 유치하는 권

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F-4-R) 운영:** 우수 외국인 인재 및 숙련 기능 인력을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 경제 활력과 인구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 정주 기반 마련:** 유학생(D-2), 비전문취업자(E-9) 등 일반 체류 자격 외국인이 지역 내 기업에 장기근속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을 거쳐 F-2-R(지역특화 우수인재)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정주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유치 및 육성

경남의 산업 구조에 필수적인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특정 분야의 외국인 유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연계:**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주력 산업 분야에 필요한 일반기능인력(E-7-3)과 전문인력(E-7-1)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을 추천하여, 경남 지역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 **지역 대학 연계:** 지역 대학의 유학생(D-2)이 졸업 후 경남 소재 기업에 취업하도록 산학 연계 취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들을 F-2-R(지역특화 우수인재)로의 전환과 E-7(특정활동) 비자로의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인재 POOL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③ 외국인 친화적 정착 환경 조성

외국인이 경남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 생활, 법률 전반에 걸친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종합 지원망 구축:** 경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별 지원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 권리 보호, 임금 체불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일원화하여 제공합니다.
- **생활 지원:**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률 및 인권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및 주거 환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경남을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 외국인 지원기관 연락처]

지원기관		전화번호	주요 역할 링크
출입국사무소	창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055-981-6000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등
	(통영출장소)	055-645-3405	
	(사천출장소)	055-835-3988	
	(거제출장소)	055-681-8133	
	부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출장소)	055-344-7830~5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창원센터	1800-5048	창원 지역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상담, 교육 및 문화 지원 https://www.mfwc.or.kr/
	거제센터	055-635-1254~5	거제 지역 조선업 등 근로자 대상 지원 및 상담 https://www.geojekorea.or.kr/
	김해센터	055-724-2725	김해 지역 근로자 대상 지원 및 상담 http://www.gimhaekorea.or.kr/
	양산센터	055-912-0255	양산 지역 근로자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상담 등 지원 https://ysfc.or.kr/
	사천센터	055-853-8884	사천 지역 근로자 및 외국인 대상 한국어/상담 등 지원 https://scfw.or.kr/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055-237-8779 055-256-8779	경남 지역 외국인주민 권리 보호, 상담, 교육 및 문화 등 정착지원 https://gnmigrant.or.kr/?l=ko
경남남도가족센터		055-274-8337	결혼이민자(F-6) 및 그 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 가족 상담,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양육 지원 https://www.liveinkorea.kr/center

2. 필수 연락망 (1345 & SOS)

국내 체류 중 행정, 생활, 응급 상황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연락처 및 활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1)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45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휴대전화 모두 가능)
해외 이용 시	+82-2-1345
상담 시간	평일 09:00 ~ 22:00 (야간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운영)
주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자격 변경, 비자 연장 등 출입국 민원 상담 - 관할 출입국 관서 안내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결과조회 -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 외국인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확인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안내 등
지원 언어	총 20개 언어 지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등)
활용 Tip	출입국민원은 복잡하므로, 1345에 먼저 전화하여 필요 서류와 절차를 상담 받은 후 하이코리아(Hi-Korea)를 통해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거나 방문 예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긴급 상황 발생 시 (SOS 채널)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이 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아래 번호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분	전화 번호	주요 상황	활용 Tip
범죄신고	112	범죄, 폭행, 도난, 실종 등 안전 문제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상황은 발생 직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도 노동/인권 침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구급/구조 신고	119	화재, 응급 환자, 생명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로 신고하더라도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의 현재 위치와 주요 증상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문의	114	개인 및 기관의 전화번호 정보 문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장소나 기관의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해당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종합안내 (법무부/출입국)	1345	출입국 관련 민원(비자, 체류, 국적, 영주권 등), 외국인 생활 정보 등 문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20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각종 외국인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차별행위 신고	1331	인권 침해, 차별 행위, 괴롭힘 등을 당했을 때 신고 및 상담이 필요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 민원 공식 포털 활용

국내 체류 관련 모든 행정 민원의 기준이 되는 공식 포털인 하이코리아(Hi-Korea)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 Portal)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합니다.

① 하이코리아 (Hi-Korea): 전자 민원 종합 포털

하이코리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로,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 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 민원서비스 포털입니다.

[주요 기능 및 민원 서비스]

구분	주요 서비스 내용
전자민원 신청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재입국 허가 등 대부분의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이나, 지문 등록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정보광장	체류 자격별 필요 서류(안내 매뉴얼), 수수료, 관할 출입국 관서 위치 등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타 조회	민원 신청 진행 상황, 체류 만료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 등 개인 체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비자포털 (Visa Portal: <https://www.visa.go.kr/>)

비자포털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비자)을 발급받는 절차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입니다. 주로 해외에서 입국 전에 정보를 찾을 때 유용하지만,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비자 정보를 조회할 때도 활용됩니다.

○ 비자 신청 안내: 체류 목적(취업, 유학, 결혼, 방문 등)에 따라 필

요한 사증의 종류, 발급 절차, 구비 서류를 안내합니다.

- **사증 신청 결과 조회:**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한 후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비자 발급:** 일부 대상자(전자사증 발급 대상)는 비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한외국대사관

대사관/영사관	전화번호	대사관/영사관	전화번호
네팔	02-3789-9770	우즈베키스탄	02-574-6554
러시아	02-752-0630	인도	02-798-4257
몽골	02-794-1951	인도네시아	02-783-5675
미얀마	02-790-3814	일본	02-2170-5200
방글라데시	02-796-4056	중국	02-738-1038
베트남	02-734-7948	태국	02-795-3098
스리랑카	02-735-2967	파키스탄	02-796-8252
에콰도르	02-739-2401	필리핀	02-796-7387

Part 2. 비자 및 체류자격

1. 비자(사증)의 종류와 이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정한 30가지 이상의 체류자격(비자) 중 하나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은 국내에서의 활동 범위(취업, 학업 등)와 체류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의 구분

체류자격은 크게 단기 체류와 장기 체류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90일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요 특징	대표적인 체류자격
단기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일 이하의 체류- 외국인 등록 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불가합니다.	B-1/B-2(사증면제/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장기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일 이상의 체류-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D-2(유학), E-7(특정활동), F-6(결혼이민), F-4(재외동포) 등 A-3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기 체류 비자

2) 입국 목적별 주요 체류자격 분류

법무부의 사증 안내 매뉴얼에 따른 체류자격은 크게 활동 분야별로 분류되며, 경남 지역 외국인에게 중요한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체류자격 분류]

분류	체류자격 (코드)	주요 활동 목적	경남 체류 시 핵심
외교/공무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업무 수행	일반적인 민원 대상은 아니며, 외교적 지위를 가집니다.
단기 활동	C-3 (단기방문)	시장 조사, 계약, 친지 방문, 관광 등 (90일 이내)	이 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불가합니다.
유학/연수	D-2 (유학)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유학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D-4 (일반연수)	어학연수, 기술 연수 등	어학연수는 D-4-1, 기술 연수는 D-4-6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취업	E-7 (특정활동)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특정 활동	E-7-4R(지역특화형 숙련기능 인력)으로 경남 지역 정주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를 통한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단순 노무	경남 지역의 주요 외국인 근로자 자격입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됩니다.
	D-10 (구직)	전문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 활동	D-2(유학) 등에서 E-7(특정활동)으로 변경하기 전 준비 기간입니다.
영리 목적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국내 기업에 투자하거나 무역 활동 등을 하는 경우	경남 지역의 산업 투자 및 경영 활동과 연관됩니다.
영주/거주	F-4 (재외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자손	대부분의 취업 활동이 자유로우나, 일부 단순 노무는 제한됩니다.
	F-2 (거주)	영주(F-5) 전 단계, 점수제 우수인재, 난민 인정자, 국민의 배우자 등	F-2-R(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은 경남 정주를 위한 핵심 자격입니다.
	F-5 (영주)	대한민국 영주 자격	국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의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F-6 (결혼이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체류하며, 다문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신의 체류자격이 허가하는 범위를 벗어나 활동할 경우(예 C-3(단기방문) 비자로 취업),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강제 퇴거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하이코리아를 통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일반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목적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1) 체류기간 연장 허가 (만료일 전 신청 원칙)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절차입니다.

① 신청 원칙

- 만료일 전 신청 필수: 체류 외국인은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원칙적으로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체류 기간이 짧은 자격은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만료일 경과 시: 만료일을 넘겨서 신청할 경우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고 연장 가능)

② 공통 구비 서류 (체류자격 공통)

모든 체류자격의 연장 또는 변경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통합 신청서(신고서)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하이코리아 민원서식 다운로드 가능)
- 여권 및 사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및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표준 규격 사진 1매
- 체류지 입증 서류: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거주/숙소 제공 사실 확인서 등)
- 수수료: 민원 종류에 따른 정부 수입 인지(전자민원 신청 시 할인)

1) (붙임) P14

될 수 있음)

※ 주의: 위의 공통 서류 외에 체류자격별로 활동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2) 체류자격 변경 허가 (목적 변경 시 필수)

현재의 체류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 D-2(유학) → E-7(특정활동))

□ 신청 절차

- 허가 요건 확인: 변경하고자 하는 체류자격의 대상 및 구비 서류 (요건)를 하이코리아 또는 1345를 통해 정확히 확인합니다.
- 신청 및 심사: 공통 서류와 변경하려는 자격의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심사기간 동안에는 기존 자격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 허가 및 등록증 재발급: 허가 시 새로운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이 부여되며,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온라인 / 방문 예약 및 신청 절차

대부분의 민원은 온라인(전자민원) 또는 방문 예약을 통해 처리됩니다.

처리 방식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출입국 관서 방문 신청
장점	수수료 할인, 시간 절약, 편리성	복잡한 민원에 대한 직접 상담 가능
이용 대상	체류 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등 비교적 간단한 민원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 등록등 심층 심사 및 지문 등록이 필요한 민원
절차	하이코리아 접속 → 전자민원 신청 → 구비 서류 파일 업로드 → 심사 → 결과 통보	하이코리아 접속 → 방문예약(날짜/시간 지정) → 예약일에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 경남 지역 관할 관서: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창원출입국·외국인청, 김해출장소, 거제출장소 등이 관할합니다. 정확한 관할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p style="text-align: right;">PHOTO 여권용 사진(35mm×45mm)</p> <p>*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taken within last 6 months</p> <p>*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Reissued)</p>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근무처 변경 · 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yy	월 mm	일 dd	성별 Sex	[] 남 M	[] 여 F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번호 Phone No.

재학 여부 School Status	미취학[], 초[], 중[], 고[]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번호 Phone No.
	학교 종류 Type of School	교육청 인가[],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Accredited school by Education Office[], Non-accredited, Alternative school[]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 · 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	---------------------------	---------------------------------	---------------------------	---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결 재	담당		체류기간	
			청장 · 소장	
			가 / 부	

수입인자는 뒷면에 첨부(Re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면제사유)

)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 통합신청서 작성예시

[작성예시]

SAMPLE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2. 4. 12.>

원하는 업무 선택
ex) D2에서 D10 변경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신청/신고 선택 SELECT APPLICATION/REPORT

신규등록,
등록증 재발급 시
3.5 x 4.5
규격사진 부착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등록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input type="checkbox"/>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최장 자력 :)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input type="checkbox"/>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input type="checkbox"/> 근무처 변경 · 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input type="checkbox"/>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input type="checkbox"/>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류자격 변경허가 (최장 자력 :)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input type="checkbox"/>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input type="checkbox"/> 체류자격 부여 (최장 자력 :) GRANTING STATUS OF SOJOURN / Status to apply for ()	<input type="checkbox"/>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REGISTRATION

작성
필수

성명 Name In Full	성 Surname NGUYEN		명 Given names HUY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yyy 2000	월 mm 01	일 dd 01	성별 Sex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남 M <input type="checkbox"/> 여 F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여권번호 Passport No.	C1234567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2025/01/01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전화번호 Telephone No.			휴대전화 Cell phone No.	010-1234-5678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Ha noi, Vietnam					전화번호 Phone No.
재학여부 School Status	미취학[], 초[], 중[], 고[]	학교 이름 Name of School	전화번호 Phone No.			
	Non-school[], Elementary[], Middle[], High[]		교육청 인가[],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번호 Phone No.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만원(ten thousand won)		직업 Occupation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전자우편 E-Mail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Refund Bank Account No. only for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2025/12/25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NGUYEN HUY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nts (Matters to be checked by officer in charge)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 · 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for each status of stay and each application type in Annex 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Immigration Act.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신청인
Applicant NGUYEN HUY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신청인의 부 또는 모
Signature/Seal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결재	담당		체류기간			
			청장 · 소장			
			가 / 부			

수입인가는 뒷면에 첨부(Avenue Stamp on the Backsid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면제사유)

210mm × 297mm [백 상지(80g / m²) 또는 중질지(80g / m²)]

작성
금지

4. 체류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기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범칙금 부과는 물론, 체류 기간 연장 불허나 강제 퇴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세 가지 핵심 의무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 관리 및 휴대 의무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철저히 관리하고 휴대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상세내용	위반시 처벌
등록증 휴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미휴대 시 과태료 부과
제시 의무	출입국관리 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제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재발급/신고	등록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예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변경)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출입국 관서에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2)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15일 이내)

이사 등으로 인해 실제로 거주하는 곳(체류지)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① 신고 기한 및 기관

○ 신고 기한: 체류지를 이전(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관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 새로운 체류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② 신고 방법

신고 방식	상세 내용
온라인 (하이코리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민원신청 > 전자민원)을 통해 주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방문 (읍·면·동)	새로운 체류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등록증과 새로운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등)를 지참하여 방문 신고합니다.

※ 위반 시: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의무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현재 자신이 소지한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① 허가 원칙

- 활동 변경 시 허가: 현재의 체류자격으로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활동(특히 취업 활동)을 하려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 D-2(유학) 자격자가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② 신고 의무 (취업 비자의 경우)

- 근무처 변경/추가: E-7(특정활동) 또는 E-9(비전문취업)과 같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 소지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 예) E-7 자격자는 근무처 변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E-9 자격자는 사업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9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제한됨)

※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불법 취업에 해당하며, 이는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5. 외국인 지원 서비스

1)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 연수생(D-4-1), 기타 체류자격으로 유학중인 외국인
- 지원내용 : 초기 정착프로그램 (한국사회 소개, 출입국관리, 한국생활 가이드)
- 지원형태 : 대한민국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유학생활 필수정보 등 3시간 교육 진행
- 교육일정 : 대학교 학기 시작 전·후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조기 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 지원대상 : 합법 체류외국인
- 지원내용 :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 교육과정 구성 : 5단계 구성

	0단계 (기초)	1단계 (기초)	2단계 (기초)	3단계 (기초)	4단계 (기초)	5단계 (기초)
과정	한국어기초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수시간 (시간)	15	100	100	100	100	한국사회이해
						기본 50 심화 20
사전평가 점수	구술 3점 미만	3점~20점	21점~40점	41점~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

- 한국어와 한국문화(0단계~4단계): 415시간
- 한국사회 이해(5단계): 70시간
- 혜택 : 귀화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심사 대기시간 단축
- 신청방법 :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메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 후 사전평가를 거쳐야 함

※ 시험 응시 전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분증을 소지하고 평가 응시

3) TOPIK 시험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 TOPIK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 유효기간 :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2026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庇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입니다. 토庇 성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한국 대학(원) 입학·졸업, 한국 기업체 취업 시 선발·인사 기준 및 한국 체류 비자 취득 등에 활용됩니다.

2026년 시행 일정							
토庇 PBT	회차	제104회	제105회	제106회	제107회	제108회	
	시험일	1.11.	4.11.~4.12.	5.17.	7.4.~7.5.	10.17.~10.18.	11.15.
	성적발표일	2.12.	5.29.	6.25.	8.13.	12.10.	12.22.
토庇 IBT	시행지역	한국	한국·해외	한국·해외	한국·해외	한국·해외	
	회차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제15회	제16회
	시험일	2.28.	3.21.	6.13.	9.12.	10.24.	11.28.
	성적발표일	3.20.	4.10.	7.3.	10.2.	11.13.	12.18.
토庇 말하기 평가	시행지역	한국	한국·해외	한국·해외	한국·해외	한국·해외	
	회차	제10회	제11회	제12회	※ 시행 일정은 국내·외 시행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정보는 토庇 홈페이지 (www.topik.go.kr) 참조		
	시험일	3.21.	6.13.	10.24.			
	성적발표일	4.13.	7.6.	11.16.			
시행지역	한국	한국	한국				

▣ 시험 종류 : 토庇 I (초급), 토庇 II (중·고급), 토庇 말하기 평가

▣ 평가 영역 및 배점

구분	평가영역(문항 수)		배점(시험시간)	시험 등급	
토庇 PBT	토庇 I	듣기(30) / 읽기(40)	200점(100분)	초급	(1급) 80점 이상 (2급) 140점 이상 (3급) 120점 이상 (4급) 150점 이상 (5급) 190점 이상 (6급) 230점 이상
	토庇 II	듣기(50) / 읽기(50) / 쓰기(4)	300점(180분)	중·고급	(1급) 121점 이상 (2급) 236점 이상 (3급) 191점 이상 (4급) 291점 이상 (5급) 361점 이상 (6급) 431점 이상
토庇 IBT	토庇 I	듣기(26) / 읽기(26)	400점(70분)	초급	(1급) 121점 이상 (2급) 236점 이상 (3급) 191점 이상 (4급) 291점 이상 (5급) 361점 이상 (6급) 431점 이상
	토庇 II	듣기(30) / 읽기(30) / 쓰기(3)	600점(125분)	중·고급	(1급) 20점 이상 (2급) 50점 이상 (3급) 90점 이상 (4급) 110점 이상 (5급) 130점 이상 (6급) 160점 이상
토庇 말하기 평가	말하기(6)		200점(30분)	초급	(1급) 20점 이상 (2급) 50점 이상 (3급) 90점 이상 (4급) 110점 이상 (5급) 130점 이상 (6급) 160점 이상
	중급	(1급) 20점 이상 (2급) 50점 이상 (3급) 90점 이상 (4급) 110점 이상 (5급) 130점 이상 (6급) 160점 이상			
	고급	(1급) 20점 이상 (2급) 50점 이상 (3급) 90점 이상 (4급) 110점 이상 (5급) 130점 이상 (6급) 160점 이상			

▣ 접수 방법

한국 응시	해외 응시
온라인 접수 (www.topik.go.kr)	해외 접수기관 방침에 따름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www.topik.go.kr) 공지사항 참고

※ 접수 기간은 반드시 홈페이지 참고(접수 기간 이후에는 접수 및 결제 불가)

▣ 시험 준비 : 토庇 홈페이지 (www.topik.go.kr) 참조 → 학습하기

한국어능력시험
국립국제교육원

Part 3. 경남 광역형 비자

경남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산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운영 기간

구분	내용
사업근거	법무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운영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	경상남도가 지역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고용 추천서를 발급하며,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최종 비자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직종 (E-7 특정활동 비자)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특정 분야의 숙련 기능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며, 오직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지정한 직종에만 적용됩니다.

체류 자격	인원 (명)	구분	주요 직종 및 경남 특화
E-7-1	130	전문인력 (21개 직종)	ICT, 제조 등 경남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기계공학 기술자, 금속·재료공학 전문가 등)
E-7-3	540	일반기능인력 (3개 직종)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정된 직종입니다. ① 조선용접공 ② 선박전기원 ③ 선박도장공

※ 참고 자료: [첨부 파일: ‘경남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침’의 목차 3. 비자세부요건]에서 직종별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혜택

경남 광역형 비자는 단순 취업을 넘어 지역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① 신청 주체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경남 지역기업이 경상남도를 통해 고용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② 예비 고용추천 신청

고용희망사업자는 예비 고용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남비자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③ 예비추천

경남비자지원센터는 예비고용추천서류를 사전 검토하여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추천합니다.

④ 고용추천

경남도지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⑤ 주요 혜택 및 장점

- 지역특화형 거주 비자(F-2-R)로의 전환: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로 일정 기간 성실히 근속할 경우,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거주 비자로 전환하여 경남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립니다.
- 경남 맞춤형 취업: 경남 지역 인력 수요에 맞는 직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외국인 구직자에게 유리합니다.

※ 시범사업의 특성상 운영 기간과 대상 직종, 요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외국인과 기업은 반드시 경상남도 및 관

할 출입국 관서에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남비자지원센터 소개 및 경남 광역형 비자 개요

경남비자지원센터란?

경남비자지원센터는 외국 전문 기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을 위해 채용 수요 조사부터 비자 발급 및 입국 관리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기관입니다.

경남 광역형 비자란?

기존 비자 제도를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된 경남 전용 외국 전문 기술 인력 비자입니다.

- ◆ 경남비자지원센터 기업지원 대상 비자 (특정 활동비자)

E-7-1 관리·전문기술직 **E-7-3 조선업 속련공**

경남 광역형 비자를 통한 채용, 무엇이 다릅까요?

- ▣ 기초 한국어 능력 검증
→ 기본적인 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을 필수 검증합니다.
- ▣ 신속한 발급
→ 경상남도의 고용추천서 발급으로 기존 비자 제도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 현장 맞춤형 인력 확보
→ 국가별 업종별 직무별로 필요한 인력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조선업 등 특정 직종은 기방 검증을 통해 실무 능력을 확인합니다.
- ▣ 전문기술인력 우선 공급
→ 주력 산업 현장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우수 인재를 연결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 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
→ 채용 수요 조사부터 발급 및 입국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합니다.



경남 광역형 비자 도입 직종

분야	21개 직종	
	관리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 기업 고용임원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ICT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금속 재료 공학 기술자 전자·광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자동차공학 전문가 비행기공학 전문가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
	화학공학 기술자 전기·전자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환경공학 기술자 자동차공학 전문가 비행기공학 전문가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전자·광학 기술자 플랜트공학 기술자 기스·에너지 기술자 조선공학 전문가 철도차량공학 전문가
제조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 • 한국어 검증 통과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 • 한국어 검증 통과

E-7-3 조선업 속련공

분야	3개 직종	
	조선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조선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기사 요건

- ▣ 자격 요건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3년 이상의 근무경력
• 한국어 검증 통과
- ▣ 조선용접공 자격요건
 - 중급 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 현지 경상남도 자체 기방검증 통과
 - 한국어 검증 통과
- ▣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자격요건
 -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소지
 - 현지 경상남도 자체 기방검증 통과
 - 한국어 검증 통과

기업 요건

공통 요건

- ▣ 경상남도 소재 기업
- ▣ 경비비자 도입 직종에 해외 전문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

E-7-1 관리·전문직종 도입 기업 요건

- ◎ 신청 가능 인원
 - 국민고용자 20% 범위 이내
 - 국민고용자 5명 미만 업체 초점 제한
- ◎ 임금 요건 : 연 2,867만원 이상
 - * 국민고용보호 적용 직종 : 기계공학기술자
 - 국민고용자 30% 범위 내 외국인 고용 허용
 - 외국인고용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고용 제한
 - 업체당 최대 3명 고용 허용

E-7-3 조선업 전문직종 도입 기업 요건

- ◎ 채용 가능 인원 : 국민고용자 30% 이내
- ◎ 임금 요건 : 도입 3년차까지 2,515만원 이상

구분	대상 업종	필수 요건
조선용접공 (7430)	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업 전영률 50% 이상 - 조선소, 선박전기원 설비제조업, 조선 기자재 업체 - 경지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내 법 위반 및 미발자 없음
선박 전기원 (76212)	선박 전기원 조선용접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전기, 선박도장, 선박부품 제조 - 선박용접공 상 업종 +* 기간 1년 경조선 *선박 도장 *선박 구성 부품 제조, *도장 등 포함
선박 도장공 (78399)	선박 도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종사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규모 조선업체 특례대상)의 경우면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3113(선박건설), 31114(선박구성부품제조), 42411(도장공사업)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 고용 가능 - 업체당 20억원 당 1명 추가 고용 가능 * 소규모 조선업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이상의 영업을 보유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기업 요건 확인용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재무제표(전년도말 기준)
-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위 서류를 기본으로 한 후 경남비자로 도입 진행 시 추가 필요 서류 요청 예정

○ 경남 광역형 비자 관련 기관 연락처

경남 광역형 비자	수행기관	연락처
① 예비고용추천	경남비자지원센터	055-210-3031~4
② 고용추천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211-3383

- 22 -

(서식2) 예비고용추천서 신청서

전문기술 외국인력 예비고용추천신청서
 (A Letter of Employment Recommendation for Special Foreign Worker)

신청인(고용업체)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지등록 번호		업종 및 분야								
과거 1년간 매출 평균	20XX년(단위:원)									
상시근로자 수	명	생산품목								
추천신청 외국인										
총 _명										
성명 (Full name)	국적 (영문/한글)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최종학교명	학위	전공	졸업일자	경남한국어 능력평가	근무직종	계약임금
		0000.00.00 (남/여)								
		0000.00.00 (남/여)								
		0000.00.00 (남/여)								
		0000.00.00 (남/여)								
		0000.00.00 (남/여)								
위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전문기술 외국인력을 도입하고자 경남 비자지원 센터에 예비고용추천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 ○ ○ ○			대표	○ ○ ○			(직인)		

Part 4. 정주 비자 경로와 지역 정착

본 파트에서는 경상남도가 외국인 인재의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 E-7-R) 제도의 핵심 정보와 다양한 비자 유형의 외국인이 정주 비자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안내합니다.

1. 지역특화형 비자(E-7-4R, F-2-R, F-4-R)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와 인구 감소 지역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경남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취업하는 조건으로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종류 및 특징]

비자코드	명칭	주요 활동	특징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경남도의 고용 추천을 받아 지역특화 직종에 취업 및 근속	장기근속 시 F-2-R로 전환 가능한 디딤돌 비자
F-2-R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지역에 안정적으로 거주 및 경제활동	취업 활동에 제약이 거의 없으며, 가족 동반이 가능하여 정착에 유리
F-4-R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경남도의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자유로운 경제활동	거주 의무 기간이 최소 2년으로 짧으며, 가족 동반이 가능하여 정착에 유리

※ 참고 자료: [첨부 파일: ‘지역특화형 비자 업무처리 지침’]에서 비자별 직종,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상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역특화 비자 신청 요건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반 비자에 비해 심사 기준이 다소 엄격하며, 지

역 의무 거주와 취업/소득 요건이 핵심입니다.

① 신청 대상 지역 및 거주 의무

- 신청 대상 지역: 경상남도 내에서 법무부 장관과 경남도가 협의하여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활성화 지역입니다. (예: 인구감소지역 시/군)
- 의무 거주: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비자 만료 시까지 협약된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전출 시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② 소득 및 학력, 한국어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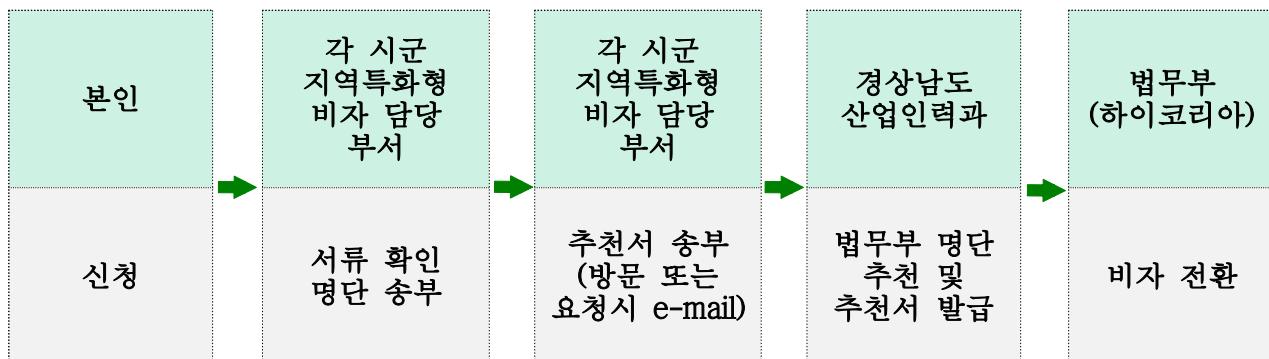
구분	E-7-4R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F-2-R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소득 요건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농·축산업, 어업·内항상선: 2,400만)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 ('25년 기준 연 29,346,108원)
학력 요건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4단계 이상	한국어능력 4급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F-2-R 비자의 경우, 소득 요건 또는 학력 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충족하면 됩니다.

□ 추천서 발급 신청

- 신청기간 : 25. 3. 5. ~ 26. 9. 30. 18시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접수

□ 추진 절차도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는 한국에서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일한 외국인이 경상남도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계속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자입니다.

□ 신청 대상

(체류자격)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당초 E-9 허용 업종 유지

□ 기본 요건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가점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 경력
- 현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국내 자격증, 학위, 운전면허 소지자
- 지자체 또는 회사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제외대상]

* 아래 ①, ③, 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① 별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자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신청 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고	부수
1	신청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서 발급 신청서 - 접수처 자체 심사표(광역지자체 추천 포함 200점 이상) - 신상 기술서 - 신원보증서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1부
2	본인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인적사항면) 	1부 (본인)
3	소득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 	1부 (관할 세무서)
4	거주지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부
5	표준근로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1부 (기업)
6	고용기업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업 추천서(현재 1년 이상 근무 기업)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 취득자 명부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부 (기업)
7	업종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 농축산업: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서> -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 조선업: <건설업등록증> - 어업/내항상선: <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1부 (기업)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유효기간 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1부 (사회 통합 정보망)
9	가점 관련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속 - 자격증 관련 분야 자격증 - 국내 학위 - 국내 운전면허증 	1부

【붙임 1】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신청유형(*)	① 지역우수[] ② 재외동포[] ③ 숙련기능인력[]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여권 유효기간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② 주소 (거주예정지)	(우편번호 :)			
	③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받음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① 현재 체류자격 [] ② 국적[] ③ 국내 체류기간[]				
동반가족 인적사항	신청인과의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년 월 ~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창원시 동읍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 (년 월 취득)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등급 · 점수
		[]상 []중 []하			급(점)
[]상 []중 []하			급(점)		
근무처(*)	회사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허용업종 / 업종코드 ex) 식료품 제조업 / C10	
	① 주소 (근무처주소)	(우편번호 :)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m²]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p>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타 지자체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천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사업기간동안 접수가 제한됩니다.</p>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점수표 자체 심사표(외국인 본인 작성)

점수제 자체 심사표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하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숙련기능인력 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문성명		외국인등록번호	
회사명		국적	
기본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점수요건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内航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R 고용계약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인구감소지역 해당없음		
	④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⑤ (한국어 능력 한시적 유예 대상자)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최소 점수(소득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150점 이상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 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 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 점 항 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		
총 점			

작성일 : 20

작성자 :

(서명)

【붙임 3】 신상 기술서(외국인 본인이 작성)

신상 기술서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속련기능인력 E74R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input type="checkbox"/> 고졸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input type="checkbox"/> 결혼 <input type="checkbox"/>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자녀1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자녀2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자녀3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자녀4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

작성자 :

(서명)

【붙임 4】 고용기업 추천 양식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기업체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숙련기능인력 E74R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성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추천내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근무예정)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 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 5】 신원보증서(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22. 2. 7.>

신 원 보 증 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피보증 외국인	성	명	漢字
	생년월일		성별
			[]남 []여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남 []여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근무처	직위		
	비고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 보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 6】 근로계약서 견본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p>* 수습기간: []활용(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개월) []미활용</p> <p>*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p>
1. Term of Labor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YY/MM/DD) to (YY/MM/DD) <p>*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_.), [] Not included</p> <p>*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p>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p>*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p>
3. Description of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p>*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p>
4. 근로시간	<p>시 분 ~ 시 분</p> <p>-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p> <p>- 교대제 ([]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p>
4. Working hours	<p>from () to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p> <p>- shift system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etc.)</p> <p>*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p> <p>*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p>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일요일 []공휴일([]유급 []무급)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Paid []Unpaid)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7. 임금	1) 월 통상임금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원 - 고정적 수당: ()원, ()원, ()원 - 상여금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won - Fixed benefits: ()benefits : ()won, ()benefits : ()won - Bonus: ()won * Wage during probation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일 또는 매주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직접 지급,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In person,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Provided,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Detached houses, []Goshiwans, []Studio flats,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Container boxes, []SIP panel constructions,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Provided([]breakfast, []lunch, []dinner),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사용자: Emplo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근로자: Employe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붙임 7】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Foreign Tenant / Recipient)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소 (Address)	(현주소)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input type="checkbox"/> 친척 (Relative)	<input type="checkbox"/> 고용주 (Employer)	<input type="checkbox"/> 기타 () (Other)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input type="checkbox"/> 자가 (Own)	<input type="checkbox"/> 임대 (Rent)	<input type="checkbox"/> 기타 () (Other)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input type="checkbox"/> 개인주택 등 (Private Residence, etc.)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Dormitory)		
주거형태 (Residence Type)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Accommodation) <input type="checkbox"/> 기타 () (Other)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명 (Name) :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 (직인/Official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붙임 8】 지역특화형비자 지방자치단체 추천서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

위임인 성명 :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 귀하

[F-2-R : 지역특화 우수인재]

□ 원칙: 인구감소지역에 실거주 및 취업/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

총 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1,191	240	30	260	60	80	30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70	80	81	210	50	-

*지역우수인재는 기초자치단체별 동일 국적 비율 30% 미만 모집

□ 예외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 제외

〔제외 대상〕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홍(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 기본요건

구분	요건
가. 학력 또는 소득	<p>①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p> <p>② (소득)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인 자('25년 기준 연 29,346,108원) *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당해연도로 한정('25년 기준은 '25.12.31.까지 적용)</p>
나.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다. 취업 또는 창업	<p>①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경상남도 생활임금 수준 이상(연 29,346,108원)</p> <p>②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p>
라. 품행단정	국내외 범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기본소양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제출서류]

① 추천서 발급 신청서(붙임2),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②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숙소제공확인서^{*} 등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③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④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⑥ 기본소양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5단계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성적표

⑦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고용 가능인원 확인용으로,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표시 요망

[F-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F-4-R)는 외국 국적 동포(F-4)가 경상남도 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F-4 비자 자체는 취업 활동에 큰 제약이 없지만, F-4-R은 지역 내 의무 거주를 조건으로 장기 정주 특례를 부여합니다.

□ 대상(추천대상)

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 (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기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한정)
- (학령기 자녀) 위 추천자격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추천필요)

[제출서류]

① 추천서 별급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

②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숙소제공확인서^{*} 등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붙임 1】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본 및 고용주·기업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본 및 고용주·기업 요건

■ 외국인

가. 학력/소득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 증빙* 필요(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 제출

2) 소득

- (주체)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기준) 신청일 기준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연 29,346,108원)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
(국토교통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411,932	3,871,106	4,314,445	4,757,784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나.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거주 · 취업 세부 유형 】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숙소 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 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 실거주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다. 취업/창업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지역) 근무처 및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취업)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경상남도 생활임금 이상(연 29,346,108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로 개시 및 고용, 계약기간 1년 이상 확인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 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단, 사업장휴·폐업 등으로 동일 사업장 또는 업종에 취업이 곤란하고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허용,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 이상 근무)
-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 ※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에 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투자금액 제외)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
 -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 추천지역 내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
-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 가능
※ 취창업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취창업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자격외 활동 허가 대상 아님)

라. 품행 단정(법무부 확인사항)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전화금융사기,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 금지 대상자

○ (준법 시민교육) 지역특화 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 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9】참조

마. 기본소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에서 5단계 이상 배정 포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고용기업 및 고용주

가. 고용기업 요건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허용인원 산정 기준**)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세금체납 관련**)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나. 고용주 요건(법무부 확인사항)

- 고용주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제12조의3(불법 출입국을 위한 물품제공·은닉도피를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 제18조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제18조제4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권유), 제18조제5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알선을 위해 지배하에 두는 행위), 제21조제2항(근무처 변경·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33조의3제1호(채무이행확보를 위한 외국인 등록증·여권 갈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9조 위반자를 포함함

-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의한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붙임 2】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서

경상남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1쪽)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우수[] <input type="checkbox"/> 재외동포[] <input type="checkbox"/> 숙련기능인력[]			
개인정보(*)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남 []여		여권 유효기간	
	① 주소 (현거주지)	(우편번호 :)		
	② 주소 (거주예정지)	(우편번호 :)		
	③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화	휴대전화
		무료 문자서비스	[]받음 []받지 않음	
	전자우편	이메일수신 서비스 []받음 [] 받지 않음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input type="checkbox"/> 현재 체류자격 [] <input type="checkbox"/> 국적[] <input type="checkbox"/> 국내 체류기간[]			
동반가족 인적사항	신청인과의관계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최종 학력사항(*)	학교명	전공(부전공)	재학기간	상태
			년 월 ~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년 월 ~ 년 월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주요 경력사항	근무처	직위	담당 업무	근무기간(연, 월)
		창원시 동읍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이력사항	보유자격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 작성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회계프로그램 []기타()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	수준	공인시험 명칭
		[]상 []중 []하		급(점)
		[]상 []중 []하		급(점)
근무처(*)	회사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허용업종 / 업종코드 <i>ex) 식료품 제조업 / C10</i>
	① 주소 (근무처주소)	(우편번호 :)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m²]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공·민간기관 제공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다른 기관의 구직 취업알선 및 정착지원 등을 위해 신청인의 구직정보 등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구직 및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중복신청 유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타 지자체 신청) <input type="checkbox"/> 무(타 지자체 미신청)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서 발급 신청이 타 지자체와 중복 추천 발견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사업기간동안 접수가 제한됩니다.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3】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Foreign Tenant / Recipient)			
국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input type="checkbox"/> 친척 (Relative)	<input type="checkbox"/> 고용주 (Employer)	<input type="checkbox"/> 기타 () (Other)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input type="checkbox"/> 자가 (Own)	<input type="checkbox"/> 임대 (Rent)	<input type="checkbox"/> 기타 () (Other)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개인주택 등 기숙사 (Private Residence, etc.)		
	<input type="checkbox"/> 숙박시설 기타 () (Accommodation) (Other)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 (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p>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p>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p> <p>(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m ² (재활용품)]			

【붙임 4】 근로계약서 견본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또는 재입국자: () 개월 -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p>* 수습기간: []활용(입국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 []개월) []미활용</p> <p>*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재입국(성실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함).</p>
1. Term of Labor contr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wcomer or Re-entering employee: () month(s) -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YY/MM/DD) to (YY/MM/DD) <p>*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or specify other: _____.), [] Not included</p> <p>* The employment term for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begin on their date of arrival in Korea, while the employment of those who re-entered through the committed workers' system will commence on their first day of work as stipulated in Article 18-4 (1) of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etc.</p>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p>*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p>
3. Description of 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p>*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p>
4. 근로시간	<p>시 분 ~ 시 분</p> <p>-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p> <p>- 교대제 ([]2조2교대, []3조3교대, []4조3교대, []기타)</p>
4. Working hours	<p>from () to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p> <p>- shift system ([]2groups 2shifts, []3groups 3shifts, []4groups 3shifts, []etc.)</p> <p>*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p> <p>* Employers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p>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일요일 []공휴일([]유급 []무급)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기타()
6. Holidays	[]Sunday []Legal holiday([]Paid []Unpaid) []Every saturday []Every other Saturday []etc.()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7. 임금	1) 월 통상임금 ()원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원 - 고정적 수당: ()원, ()원, ()원 - 상여금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won - Fixed benefits: ()benefits : ()won, ()benefits : ()won - Bonus: ()won * Wage during probation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일 또는 매주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직접 지급,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In person,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제공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조식, []중식, []석식)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Provided,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Detached houses, []Goshiwans, []Studio flats,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Container boxes, []SIP panel constructions,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_____.)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Provided([]breakfast, []lunch, []dinner),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사용자: Emplo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근로자: Employe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3. 지역 인재가 되는 경로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또는 F-2-R(지역특화 우수인재)로의 전환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체류자격	전환 경로 (Bridge)	정주 목표 자격
유학생 (D-2/D-10)	국내 대학 졸업 및 인구감소지역 취업 → F-2-R 자격 변경 신청	D2(유학)/D10(구직) →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전문취업 (E-9)	한국어 및 기능 숙련 → E-7-4R 자격 변경 및 지역 의무 근속 → F-2-R 신청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전문인력 (E-7)	지역 특화 직종 근속 및 고소득 달성 → F-2-R 신청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 F-5(영주)
재외동포 (F-4)	경남 인구감소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및 추천 신청	F-4-R(지역특화 재외동포) → F-5(영주)

□ 점수제 비자의 핵심 요소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전환 시)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 전환 시에는 소득, 학력, 경력 외에 지역 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점수제(Point System)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지역 가산점: 경남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및 근속한 경력
- 한국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단계 및 TOPIK 점수
- 사회 기여도: 지역 봉사 활동, 세금 납부 실적 등
- ★ 전략: 경남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취업 외 활동 (KIIP 이수, 한국어 능력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F-2-R 전환에 필요한 점수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경상남도 및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경상남도 및 시·군 지역특화형 비자 담당부서]

연번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1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055-211-3384	-
2	경상남도	경남비자지원센터	055-210-3031~4	-
3	통영시	일자리경제과	055-650-5235	창원(통영)
4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	055-831-3476	창원(사천)
5	밀양시	투자유치과	055-359-5840	부산(김해)
6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055-570-2925	창원
7	합천군	경제기업과	055-580-2655	창원
8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055-530-1685	창원
9	고성군	경제기업과	055-670-2493	창원
10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4	창원(사천)
11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055-880-2193	창원(사천)
12	산청군	경제기업과	055-970-6812	창원
13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23	창원
14	거창군	인구교육과	055-940-8883	창원
15	합천군	일자리경제과	055-930-3392	창원

Part 5. 유형별 맞춤형 체류 안내

이 파트에서는 경남에 거주하는 주요 체류자격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민원 절차와 생활 정보를 유형별로 안내합니다.

1. 유학생 (D-2 유학, D-4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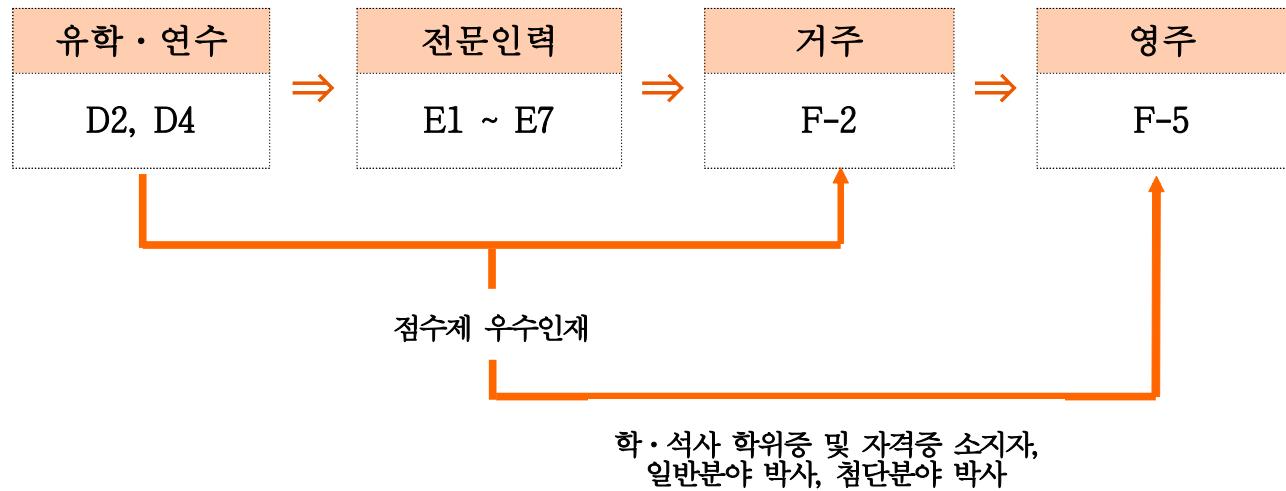
유학생은 학업을 주된 목적으로 체류하므로, 학업 관리와 체류자격 유지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① 비자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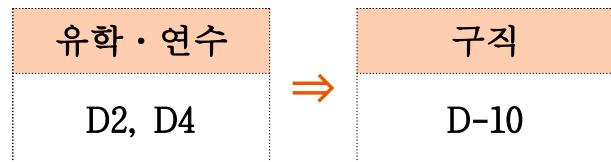
체류자격	세부 대상	체류자격	세부 대상
D-2 (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연구과정 유학생교환학생일·학습연계과정 유학생방문학생	D-4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어 연수생대학부설 어학원 제외기관 연수생 (외국인투자기업 등)고등학교 이하 재학생한식조리연수생사설기관 연수생외국어 연수생

② 맞춤형 체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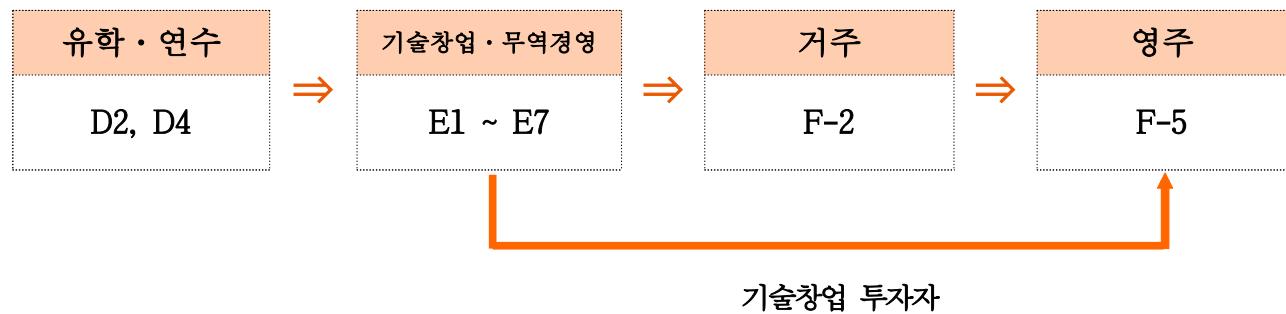
□ 유형1: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 유형2: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 유형3: 유학생이 창업, 무역경영 후 영주 자격 취득



□ 유형1

유학생이 취업 후 영주 자격 취득

○ 1단계 (유학 · 연수 → 전문인력)

- 각 체류자격에 맞는 취업 요건 충족

○ 2단계 (전문인력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E-1~E-7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점수제 우수인재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유학] 자격에서 [거주] 자격으로 바로가기 가능

○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 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 ·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 학 · 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 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 유형2

유학생이 졸업 후 구직 자격 취득

○ 1단계 (유학 · 연수 → 구직)

- **(D-10, 일반구직)** ①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학사 학위(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점수 요건을 충족 또는 ②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의 경우 점수제 면제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토픽 4 유효 성적표를 소지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사전평 배정자는 점수제 면제

- **(D-10, 기술창업준비)** 기술창업(D-8) 자격에 해당하는 기술 창업 준비 하려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요건을 충족

□ 유형3

유학생이 창업, 무역경영 후 영주 자격 취득

○ 1단계 (유학·연수 → 기술창업·무역경영)

- (D-8,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취득, 국외 학사 이상 취득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점수제 등 요건을 충족하거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요건 충족
 -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D-9, 무역고유거래) 무역비자 점수제에 따른 점수 및 요건 충족
 -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D-9, 유학무역경영) 국내 석사 이상 취득(예정)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회사 경영

○ 2단계 (기술창업·무역경영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 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F-5, 기술창업 투자자) 기술창업(D-8)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자로 3억원 이상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 고용
- * 일반영주,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 기술창업 투자자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③ 학업 관리 및 체류 연장

출석률 및 성적 관리: D-2(유학), D-4(일반연수) 비자는 출석률이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학 및 어학원의 규정(통상 70%~80% 이상)을 준수해야 하며, 성적 미달 시 체류 연장이 거부되거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 신고: 학교 기숙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 대상자: 어학연수(D-4)자격 및 방문학생(D-2)자격 변경일·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자, 유학(D-2) 체류자격자 중 일부
- 허용범위: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 허용: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 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허가 필수: D-2(유학), D-4(일반연수)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한 시간: 허용되는 시간은 학력, 한국어 능력(TOPIK), 학교의 추천 등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학기 중 주당 20~25시간 이내, 방학 중 제한 완화)
- 위반 시: 허가 없이 일하거나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경우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⑤ 졸업 후 진로

D-10(구직) 비자 전환: 졸업 후 국내 기업 취업을 희망할 경우, D-2(유학) 비자에서 D-10(구직) 비자로 변경하여 구직 활동 기간(통상 6개월~1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센터 연계: 다문화/외국인 학생 지원센터, 관할 출입국 관서

2. 전문인력(취업) (E-1 ~ E-7)

특정 활동(전문인력)에 종사하는 인력을 위한 정보입니다.

①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체류자격	세부 대상
E-1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 연구, 지도하는 자 	E-5 (전문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자
E-2 (회화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회화 지도 강사 정부초청 보조교사 	E-6 (예술홍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 활동하는 자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자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E-3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예체능 등 분야의 연구원 	E-7 (특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점수제)

② 근무처 변경 및 추가 허가 의무

- 사전 허가 필수: E-7(특정활동) 비자 소지자가 근무하는 회사(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격 외 활동: 허가받은 직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 취업입니다.

③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유형1: 취업한 사람(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취득



□ 유형1

취업한 사람(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취득

○ 1단계 (전문인력 → 거주)

- (F-2, 점수제 우수인재)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점수제 요건 충족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제 가점 부여
 - (F-2, 장기체류자)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홍행), E-7(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 2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및 세부 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D-7~D-10, E-1~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F-5, 첨단분야 박사) 국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학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특정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기술 자격증 취득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며 국내 기업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근무
- (F-5, 일반분야 박사)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 (F-5, 점수제 영주자) 점수제 거주(F-2) 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 일반영주, 학·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점수제 영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 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 * 첨단분야 박사, 일반분야 박사의 경우 기본소양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면제

④ 숙련 경로를 통한 장기 정주

- E-7-4(숙련기능인력) 비자: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등에서 일정 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 및 숙련 요건(점수제) 을 충족하면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 정주(F-2-R(지역특화 우수인재), F-5(영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경로입니다.
- 경남 지역 연계: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통해 경남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할 경우,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천 제도】

지역특화 비자(F-2-R, E-7-4R)는 경상남도의 지자체 추천이 필수입니다.

- 신청 및 검토: 신청자는 거주 예정지 시·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시·군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경상남도 산업인력과로 추천 명단을 제출합니다.
- 최종 추천: 경상남도의 최종 심사를 거쳐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⑤ 동반 가족 초청

- (F-3, 동반) E-1(교수)~E-7(특정활동) 자격 소지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 가능
- (F-1, 우수인재 · 투자자 및 유학생의 부모) E-1(교수)~E-7(특정 활동) 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F-1 자격으로 초청 가능 (단, 국내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상기 체류자격으로 변경 한 자는 GNI 이상으로 완화)

3. 비전문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고용허가제에 따라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정보입니다.

①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E-9 (비전문취업)	· 제조업(E-9-1), 건설업(E-9-2), 농축산업(E-9-3), 어업(E-9-4), 서비스업(E-9-5) 종사자
E-10 (선원취업)	·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E-10-3)

② 맞춤형 체류 흐름도

□ 유형1: 취업한 사람(비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취득



□ 유형1

취업한 사람(비전문인력)의 영주 자격 취득

○ 1단계 (비전문인력 → 숙련기능인력)

- **(E-7, 숙련기능인력)**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 소지자로 최근 10년간 5년 이상 국내에서 합계 계속하여 취업 활동을 하고 점수제 등 요건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5단계 이상 이수자의 경우 점수 부여

○ 2단계 (숙련기능인력 → 거주)

- **(F-2, 장기체류자)** E-7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자로 품행 요건, 생계유지 요건 등 모든 요건을 충족

*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 이상 취득

○ 3단계 (거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일반영주)** E-7 체류자격이나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 일반영주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③ 사업장 변경 제한 규정

○ 원칙적 제한: E-9(비전문취업) 비자는 고용허가제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변경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횟수 내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사업주의 근로 조건 위반, 임금 체불, 폭행, 휴업 또는 폐업 등

○ 절차: 사업장 변경은 반드시 고용센터와 관할 출입국 관서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 근로 권리 보호 및 지원

○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 상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근무 중 산업재해(산재)를 당한 경우, 경남 소재 근로자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법률적 및 행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퇴직금 및 귀국 준비: 출국 전에 반드시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하고, 가입된 귀국만기 보험금(출국만기 보험, 귀국보험 등)을 확인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4. 결혼이민 (F-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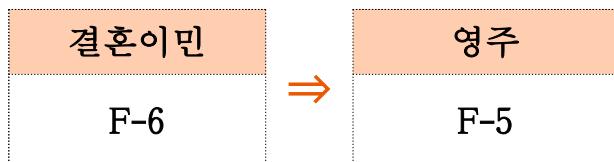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정보입니다.

① 비자의 종류

체류자격	세부 대상
F-6 (결혼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의 배우자자녀 양육자혼인 단절자

② 맞춤형 체류 흐름도

유형1: 결혼이민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유형1 결혼이민 자격자의 영주 자격 취득

○ 1단계 (결혼이민 → 영주)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고, 영주 공통요건(품행 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세부자격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F-5, 국민의 배우자**) F-6(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자, 혼인단절자) 자격으로 2년 이 체류
* 국민의 배우자(영주)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할 경우 기본소양 요건 충족

③ 체류 연장 및 가족 생활 안정

- 체류 연장: 체류 기간 연장 시 혼인 관계의 진정성 유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지 입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생활 사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한국어 교육, 통·번역, 가족 상담, 자녀 양육 정보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④ 사회 통합 프로그램 (KIIP)

- 한국어/사회 이해 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영주권/국적 취득 필수: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가 F-5(영주) 또는 국적(귀화)을 신청할 때 KIIP 이수 또는 한국어 능력은 필수 요건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원 센터 연계

- 경상남도가족센터(<https://www.liveinkorea.kr/center/>)
- 사회통합정보망

⑤ 취업 활동 범위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영리 활동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단, 사행산업 종사 등은 관련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⑥ 유의사항

-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의 전입 신고와 별개로 신고하여야 함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F-6(혼인단절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F-1(혼인단절 결혼이민자) 자격으로 변경 가능

⑦ 동반 가족 초청

(F-1,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적,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초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등 가족을 F-1(방문동거) 자격으로 초청 가능

5. 재외동포 (F-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자손)을 위한 정보입니다.

① 국내 거소 신고 의무

- 외국인 등록 대체: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는 90일 초과 체류 시 일반 외국인과 달리 외국인 등록 대신 국내 거소 신고를 합니다.
- 신고증 활용: 발급받은 국내 거소 신고증은 국내에서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금융 거래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됩니다.
- 체류지 변경 신고: 이사 시 국내 거소 신고증 소지자도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자유로운 활동과 취업 제한

- 활동 자유: F-4(재외동포) 비자는 대부분의 취업 활동이 자유로우며, 별도의 취업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취업 제한: 다만,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는 일부 직종(예: 건설 현장의 단순 노무직, 유통업소 관련 직종 등)은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취업 전에 직종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센터 연계: 관할 출입국 관서, 지역 내 동포 지원 단체

Part 6. 출입국민원 & 기타

1. 민원 신청 방법

① 전자민원 이용 안내

아래 업무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하이코리아에서 민원신청 가능 (전자민원 이용 시 법정수수료의 20% 할인 혜택 제공)

[전자민원 대상 업무]

- 체류기간연장허가
 - 단기체류자 : 모든 체류자격
 - 등록외국인 : 일부(D-3:기술연수, D-8:기업투자, E-7:특정활동, F-2:거주, F-6:결혼이민, G-1:기타, F-1:방문동거)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모든 체류자격 가능
- 재입국허가
- 여권변경신고
- 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신고
- 체류자격변경허가 [D-2:유학, F-4:재외동포(일부 제한) 자격으로 변경]
- 근무처변경허가 (E-9:비전문취업)
- 시간제취업허가 (D-2:유학, D-4:일반연수)
- 고용 · 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 (D-3:기술연수, E-1~E-10, H-2:방문취업)
- 취업개시신고 (H-2:방문취업)

② 출입국민원 대행제도 안내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 등)을 통해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의 업무 처리 가능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출입국민원 대행 등록기관 조회 가능

※ 주의사항

대행 신청이더라도 지문 수집, 본인 확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외국인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상 요청에 불응할 경우 신청 등이 거절 또는 유보될 수 있습니다.

③ 전자팩스(FAX) 이용 안내

- 전자팩스를 통해 각종 신고 업무 가능 (FAX:1577-1346)
- ※ 전국 단일번호(1577-1346) 사용, 신고 가능시간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09:00 ~ 18:00

[이용 가능 사무]

- 고용변동신고
- 등록사항 변경 신고 중 아래 항목
 - 방문취업 동포의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의 변경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변경 포함)
 -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 인턴신고

※ 주의사항

- 반드시 법무부 회신문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수신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문은 신고서 등이 처리기관에 착신되었음을 알려드릴 뿐,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되었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팩스 신고 후 반려되어 사무소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④ 출입국 방문 신청 안내 (방문예약)

- 전국의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신청 필요

⑤ 전자비자제도 안내

- 전자비자란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전자비자 신청 가능

[발급대상]

○ 장기체류비자 (90일 초과 체류 가능)

-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KOTRA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E-7(특정활동)

- 인증대학 석·박사과정 입학 예정 유학생(D-2-3, D-2-4)

- 외국인 환자와 그 동반 가족(G-1-10)

※ 법무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에 한함

○ 단기체류비자 (90일 이내 체류 가능)

- 재외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자가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현재 중국 및 동남아 3개국(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시행중

-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C-3-3)

※ 법무부 지정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경우에 한함

- 국내 기업에서 초청하여 상용목적으로 빈번 출입국하는 사람(C-3-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증대학에서 초청하는 외국인 과학자(C-4-5)

2. 기타 온라인 서비스

① 각종 증명 온라인 발급 (정부24)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증명 온라인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 가능 증명]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적 선택 사실증명

○ 국적 취득 사실증명

○ 국적 보유 신고 사실증명

○ 국적 이탈 사실증명

○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② 각종 정보 조회 서비스 (하이코리아)

[조회 가능한 업무]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조회
- 등록증·거소증 유효확인
-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
-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 체류만료일 조회
- 육아도우미 교육수료자 조회
- 통합고용변동 민원조회
- 전자민원 허가서 발급 확인
- 출국금지 여부 조회 (한국인 전용)

Part 7. 경남에서의 안정된 일상생활

이 파트에서는 경남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체류자격(비자), 노동 권리, 건강, 주거, 법률 및 사회 적응 교육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1. 비자(사증) 및 체류자격 상담

한국에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류자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전 연장 신청을 누락하거나, 체류 자격별 활동 범위를 벗어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남비자지원센터의 전문 상담: 경남비자지원센터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복잡한 출입국 및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뉴얼의 상세 내용 외에도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 상담 분야>

- 체류자격 변경: 유학생(D-2), 구직자(D-10), 비전문취업자(E-9) 등의 전문인력(E-7) 또는 지역특화 비자로의 변경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 체류기간 연장: 체류 기간 만료일 임박 시 연장 절차, 필요 서류 및 온라인(하이코리아) 신청 방법 안내
- 경남 광역형 비자 (E-7-1, E-7-3):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광역 비자 제도의 대상 지역, 허가 요건, 신청 경로 및 혜택 등 최신 정보 안내
- 지역특화형 비자 (F-2-R, E-7-4R): 경상남도 지자체 추천이 필요한 지역특화 비자의 세부 요건 충족 및 신청 절차, 우대 혜택 관련 상담
- 법률 준수: 체류 자격별 활동 범위 및 의무 사항 안내

2. 근로 권리 및 노동 상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 임금, 주 40시간 근무,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한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노동 문제 발생 시 구제 절차: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폭행, 산업재해(산재) 등 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거주지 근처의 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동 상담 및 구제 절차를 지원해 줍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에서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 외국인력상담센터(T. 1577-0071)			● 전국 노동관서 다국어상담원 연락처(‘25. 8월 기준)		
관서	가능 언어	다국어상담원 연락처	관서	가능 언어	다국어상담원 연락처
중부청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032-460-7135	양산지청	미얀마어	055-330-6448
	태국어	032-460-7136		영어, 러시아어	055-330-6450
	베트남어	032-460-7137		캄보디아어	055-330-6451
인천북부지청	캄보디아어	032-540-2097		중국어	055-330-6432
부천지청	방글라데시어, 영어	031-999-0907		네팔어, 힌디어	055-330-6446
	인도네시아어	031-999-0908		베트남어	055-760-6758
의정부지청	몽골어	031-820-0824	진주지청	베트남어	055-760-6759
	네팔어, 파키스탄(우르두)어	031-828-0823		베트남어	055-730-1922
	베트남어	031-828-0902		중국어	053-667-6047
	캄보디아어	031-828-0901	대구청	네팔어, 파키스탄어	053-667-6048
	미얀마어	031-828-0903		캄보디아어	053-605-6574
경기지청	우즈베키스탄어	031-290-0879		인도네시아어	053-605-6576
	미얀마어	031-289-2208		필리핀어, 영어	053-605-6575
	캄보디아어	031-290-0880	포항지청	베트남어	054-288-3500
	네팔어	031-290-0876		네팔어	062-609-8686
	태국어	031-290-0888		캄보디아어	062-609-8687
안양지청	베트남어	031-463-0774	광주청	베트남어	062-609-8688
안산지청	미얀마어	031-496-1923		인도네시아어, 동티모르어	062-609-8689
평택지청	인도네시아어	031-646-1217		네파리언어, 힌디어	063-839-0040
	중국어	031-646-1213		베트남어	063-450-0607
	영어, 인도어	033-769-0952	대전청	베트남어	042-470-8326
부산청	영어, 인도네시아어	051-860-2026		캄보디아어	042-470-8328
부산동부지청	인도네시아어	051-559-6606		필리핀어, 영어	043-229-0755
부산북부지청	우즈베키스탄어	051-330-9925	천안지청	네팔어	041-620-9582
창원지청	중국어	055-239-3553		베트남어	041-620-7465
	필리핀어, 영어	055-239-3552		캄보디아어	041-620-9553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055-239-3551		키르기스어, 러시아어	041-620-9583
울산지청	네팔어, 힌디어	055-239-3554	충주지청	네팔어, 영어	043-850-4052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어	052-228-1913		베트남어	043-850-4051
			보령지청	베트남어	041-930-6267

3.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 이용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6개월 이상)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병원 및 약국 이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증(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및 이용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대처: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국번 없이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와 구조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9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구분	내용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보험 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생명이 위급한 경우 지역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의료통역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의료 기관 이용 시 3자 통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경남 지역의 일부 대형 병원에는 외국인 전용 클리닉이나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민원 상담: 1577-1000 또는 ARS 7번(외국어 상담)을 선택하여 보험 가입 및 이용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정보 및 민원
<https://www.nhis.or.kr>

4. 주거 및 교통 안내

-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집(전세/월세)을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

해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변경되면 정부24를 통해 서도 전입신고(체류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 경남 지역 대중교통 이용: 경남 지역은 시내버스가 주요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교통 카드(예: 티머니, 캐시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면 편리하며, 버스 간 환승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 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및 인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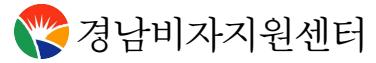
- 무료 법률 상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률적인 문제(민사, 형사, 가사 등)에 직면했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권 침해 및 차별 상담: 국적, 피부색,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역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또는 경남 이주민 노동자 상담소에 연락하여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은 한국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습니다.

6. 한국어 및 사회 적응 교육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장기 체류 비자(F-2-R, F-5)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은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사회 이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공식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이 프로그램 이수 시 F-5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귀화) 심사 시 혜택을 받거나 필수 요건이 됩니다.
- 교육 정보: KIIP 신청 및 단계별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IIP 포털(사회통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한국어 교실과 적응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까운 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 <https://gnprojob.com/>

전화번호: 055-210-3031~4